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홍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3

발의년월일 : 2017년 4월 4일
발 의 자 : 장홍순 의원(1명)
찬 성 자 : 김동율・유 용・오경환
김진철・김혜련・이병해
장인홍・김제리・박마루
성백진・김창원 의원(11명)

1. 제안이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출산장려금 지급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 중이나 각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나 출산율에 따라 출산장려금의 지급기준이나 지급금액이 상이한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1.68명, 2014년 기준)보다 낮은 1.21명(2014년 기준)으로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 비용 지원의 수혜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 비용의 지급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출산 비용 지원) 시장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출산 비용 지원) 시장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의2(출산 비용 지원) 신설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출산 비용 지원)에서 "시장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이 불분명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 곤란

※ 현행 출산비용 지원은 전액 구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자치구별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등이 상이함(참고자료)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최경희
☏ 02-3705-1282
e-mail : hiru90@seoul.go.kr